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091호
- 나. 발 의 자 : 양민규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0년 12월 22일
- 라. 회부일자 : 2021년 01월 21일

2. 제안이유

- 가. 여성의 경우 매달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해 일정기간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 감면 사유에 여성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나. 그러나 시립체육시설에 해당하는 서남권 돛구장 수영장의 경우 여성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조례상 감면대상에 제외되어 있는바, 이를 조례상 감면 대상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입법의 불비를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여성에 대한 수영장 사용자 감면대상에 서남권 돛구장을 명시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2호라목).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 동향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최근 2년간 의원발의 7건, 시장제출 3건으로 총 10차례 개정되었으며, 자원봉사자 및 차상위계층, 의사상자 유족 및 가족의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액, 노인, 청소년, 장애인의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 확대,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다목적구장, 산악문화체험센터 등 신규시설 이용료 명기 및 시립체육시설의 전용 사용료 현행화 등을 위한 것임.

나. 개정조례안 검토

- 동 조례안은 서남권돔구장 수영장의 사용료 부과시 여성할인제도(월경기간)도입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안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2호라목 사용료 감면대상에 서남권 돔구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시는 '08년 3월부터 시립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을 대상으로 월경기간을 고려하여 월 사용료 100분의 10을 감면해 줌.

수영장 여성할인제도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성들이 월경으로 수영장 이용에 제한을 받아도 개인사정으로 치부해 할인이나 보상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2006년 20대 여성이 월경을 이유로 수영장 이용 기간 연장을 거절당하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일을 계기로 시작된 것임.

고척돔구장은 '15년 11월 개장 이후 여성할인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16년 18백만원, '17~'19년 각 39백만원 등 감면 혜택이 있어왔으나

조례 정비 미비로 감면대상에 누락되어 있어 이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타당한 조치로 보임.

- 또한 안 부칙 제2조에서 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로 서남권 돔구장 수영장에 대한 개정규정을 2016년 6월 7일부터 적용하도록 한 바, 이는 실질적으로 서남권돔구장 수영장의 여성할인제도 혜택이 발생한 때로 소급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통상 신법을 소급적용한다는 취지의 적용례는 완성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사후에 그 전과 다른 법적 효과를 발생할 경우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금지함.

특히 형벌의 부과, 재산권의 박탈, 참정권의 제한, 조세의 부과 외에도 국민에게 불리한 조치에 대한 진정소급입법은 헌법 상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동 조례의 경우 명문화된 근거없이 발생한 여성할인제도에 대한 근거를 소급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박지혜	02-2180-8117

발의개요

- 안 건 명: 의안번호 209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영등포구)
- 발의일자: 2020.12.22.(화)
- 제안이유: 시립체육시설에 해당하는 서남권 돔구장 수영장의 경우 여성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조례상 감면대상에 제외되어 있어 이를 조례상 감면 대상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여성에 대한 수영장 사용료 감면대상에 서남권 돔구장을 명시하여 규정 (안 제10조제2호라목)

 부서 검토의견 : 『원안가결』

- 현재 서남권 돔구장 수영장은 여성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조례상 감면대상 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음
- 조례개정을 통해 해당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함